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210 발의연월일 : 2023. 2. 23.

발 의 자: 박주민·강민정·권인숙

김정호 • 문진석 • 유정주

이수진 • 이수진(॥) • 진성준

최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일상생활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.

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,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신설, 제30조제5호, 제65조제1항제3호 신설 등).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신고) 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 공공장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소에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신 고(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(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요건, 절차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제1호를 삭제한다.

제30조제5호 중 "그 밖에"를 "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"로, "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를 "경우"로 한다.

제6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·공익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 서의 정보 이용 등을 위하여 공중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
	기간통신사업 신고) ① 국가
	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
	적의 비영리사업으로 공공장소
	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
	에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
	있다.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
	자치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
	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신
	고(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
	포함한다)를 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
	을 신고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
	단체는 그 신고한 사항 중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
	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
장관에게 변경신고(정	
	에 의한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
	를 하여야 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
	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요건, 절
	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
	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등록의 결격사유) 전기통신
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
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
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
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
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.·3. (생 략)
- 제30조(타인 사용의 제한) 누구든 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~ 4. (생 략)
 - 5. <u>그 밖에</u>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<u>경우로서 대통령</u>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65조(목적 외 사용의 제한)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

제7조(등록의 결격사유)
 <삭 제>
<u> </u>
제30조(타인 사용의 제한)
 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</u>
→l O
<u>경우</u>
제65조(목적 외 사용의 제한) ①

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 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
1.·2. (생략) <신_설>

② ~ ④ (생 략)

•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·공익 목적으로 공공 장소 등에서의 정보 이용 등 을 위하여 공중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